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677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 번호	대표발의자	제안일	심사경과
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7517	조정태의원	'25.1.15	-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’25.2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-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2.4.) 상정
	2213997	문대림의원	'25.11.7	-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(’25.11.21.) -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2.4.) 상정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2.4.)
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
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0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12.19.)에

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
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림축산식품법
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·도지사도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·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.

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,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,

지역·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,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(안 제8조제1항).
- 나.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(안 제108조제6항 신설).
- 다.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(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).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50만제곱미터”를 “30만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108조의 제목 “(자금지원)”을 “(자금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 나목의 경지 정리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·보수 및 준설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<u>50만제곱미터</u>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.	제8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30만제곱미터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</u>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8조(<u>자금지원</u>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8조(<u>자금지원 등</u>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</u>

제117조(지정 해제) ① 지역·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지역·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 · ③ (생략)	<u>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</u> 제117조(지정 해제) ①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